



제2녹색시대 개최 여의도에서 양계산업도 참여



최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림수산부가 주관하여 개최한 제2녹색시대 행사가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다.

참여자는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주부, 직장인, 학생 등 각계각층이었으며 4백만명이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각도의 특산물 전시를 위주로 홍보점 썬값에 판매하는 기회를 마련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한

국가공산업의 가능성을 인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양계분야는 동부축산(요드란 및 G.P계란), 천호인티(닭고기 가공품), 한일식품(통닭 및 후라이드치킨)이었으며 한국양계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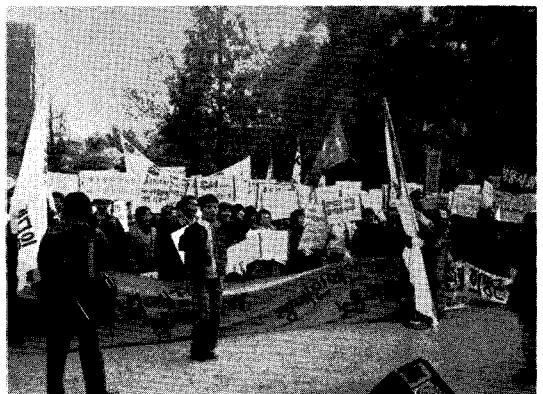
농림수산 정책개발 세미나개최 12월10~11일, 농업공무원 교육원에서

농림수산부는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만에 걸쳐 관련부처인 청와대, 총리실, 경제기획원, 교육부와 농림수산부, 본회를 비롯한 농어민단체와 기타 단체대표자를 중심으로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농어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환기적 농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농어민 단체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이고 조화있는 협조방안을 마련코자 열리게 된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정명채(농경연 연구위원), 이내수(농협 농촌개발부장), 이정찬(전국농어민회 총연맹)씨가 할 예정이다.

경제개혁 촉구 시민대회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지난 11월16일 탑골(구 파고다) 공원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 촉구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농민 및 시민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불안, 국제수지적자 확대,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벌기업들의 땅투기 경쟁, 불로소득계층의 향락과 과소비 조장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열렸다.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짐을 느끼며 근로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 및 시민의 한결같은 마음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가 하루속히 뿌리 내리게 되도록 촉구하였다.

우리쌀 지키기 위한 대토론회 개최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지난 11월1일 전국 농업기술자협회에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칼라힐스 미국 무역대표가 내한하여 예외없는 시장개방주장을 반복하며 우리의 쌀시장 개방을 강요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있는 시점에서 마련된 토론회로 미국의 쌀시장 개방압력을 철회할 것과 정부의 쌀시장 개방 불가방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가축전염병규칙 개정 수출입규정 및 검역 강화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월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공포 하였다.

주요 골자는 지정검역물의 대상확대,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시험연구에 필요한 물

건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을 정했다.

또한 수입 육류의 전용 보관창고, 수입 면양모의 가공공장 등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의사를 상주토록 했으며, 국립동물검역소장은 지정검역물 중 동물이나 사체를 수입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검역물의 검역장소, 검역물량 등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해 검역업무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행정 공개행정으로

단체 및 조합의 폭 넓은 의견수렴 위해

농림수산부 축산국은 11월말경 부터 12월초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내년도 품목별 수급전망 및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92년도 축산기금 운용방안 등 축산정책수립에 여론을 반영할 예정이다.

축산행정의 공개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양축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산행정의 지표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게 된다.

'92년도 축산정책자금 확정

내년도 축산분야에 지원자금은 축협의 축산진흥기금을 제외하고도 총 4천843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축산분야 정책자금은 양축자금과 농발기금으로 이중 양축자금은 금년보다 600억원 늘어난 2천800억원, 농발기금은 2천43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양축자금은 재정자금 400억원, 축협금융조달자금 1천320억원, 한국은행차입금 8백80억원으로 조성되어 부업 또는 전업양축가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농발기금은 구조개선 계정의 축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축사시설개선에 632억원, 조사료생산기계획 24억5천만원, 축산기계획 1백40억원, 축산단지 1백12억원, 계열화사업 1백12억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96억원, 정착촌구조개선 39억원, 폐수처리시설 3백19억원5천만원, 후계장육성 400억원으로 각각 지원된다.

그러나 양육자금의 경우 전체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선으로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

'91년 10월 중 병아리 생산실적

농림수산부가 집계 발표한 전월대비 실용계의 경우 산란용이 1,954수에서 2,212수로 13% 증가하였고, 육용이 12,470수에서 13,895수로 11% 증가하여 실용계는 총 14,424수에서 16,107수로 12% 증가하였다.

중계의 경우 산란용이 33수에서 54수로 64% 증가하였고 육용이 398수에서 475수로 19% 증가하여 중계는 총 450수에서 529수로 23% 증가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실용계의 경우 산란용이 2,046수에서 2,212수로 8% 증가하였고, 육용이 13,916수에서 13,895수로 약간 감소하여 실용계는 총 15,962수에서 16,107수로 1% 증가하였다.

중계의 경우 산란용이 69수에서 54수로 22% 감소하였고, 육용이 224수에서 475수로 112% 증가하여 중계는 총 293수에서 529수로 80% 증가하였다.

전년누계대비 실용계의 경우 산란용이 21,411수에서 20,789수로 3% 감소하였고, 육용이 139,301수에서 149,259수로 7% 증가하여 실용계는 총 160,715수에서 170,050수로 6% 증가하였다.

중계의 경우는 산란용이 413수에서 463수로 12% 증가하였고, 육용이 2,462수에서 3,068수로 25% 증가하여 중계는 총 2,875수에서 3,531수로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 천수)

축산관련시설 허가시 주민동의서 불필요 축사건축시 주민동의서 폐지

농림수산부는 내무부주관, 전국시도지사회의를 통해 축산관련시설 허가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한 일선행정당국의 관행을 폐지토록 지시했다.

그간 축산관련시설 허가시 관계규정에도 없는 주민 100%의 동의서까지 일부지역에서는 요구하여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림수산부는 내년까지 축산폐수문제 완결을 목표로 폐수처리 시설비를 대폭 지원하는 한편 전업규모축사·폐수처리시설모델을 금년내로 개발, 양축농가에 보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축산관련시설 허가시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춰 합당한 허가요청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즉시 허가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다.

축분처리 비료공장 설치건의 건설부 긍정적 검토중

계분의 하천유입 문제로 지난 10월 매스컴에 경기도 포천군 일대의 실상이 보도되자 경기도는 건설부에 계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계분비료공장의 설치허용에 관한 건의를 하여 수도권정비계획상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도권역 등의 양계단지에서 배출되는 계분을 위생적으로 처리, 활용하여 비료를 생산코자 하는 계분비료공장의 설치허용요구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 소득증대차원에서 허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동공장의 설치가 시급한 포천, 이천 등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대단위 양계단지에 설치코자 하는 공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제1호 나목 및 제17조제2항 단서 제1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협종공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시는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

유도권역의 지역에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없이도 설치가 허용되는 동법 시행령 별표 업종(지연성 업종)에 포함함으로써 수도권 외곽지역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만으로도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반영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한국부화협 이사회 개최 양승덕씨가 회장직무대행키로

한국부화협회는 박준영회장이 신병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양승덕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짓고 회장단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협회를 운영해나가도록 했다.

축산폐수 및 유해잔류물질 방지교육 실시

농림수산부는 '91.11.4~11.3일까지 축산폐수 및

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회교육(4일)은 서울, 인천, 경기, 제2회교육(5일)은 강원, 제3회교육(6일)은 대전, 충남북, 제4회교육(11일)은 광주, 전남북, 제5회교육(12일)은 대구, 경북, 제6회교육(13일)은 부산, 경남, 제주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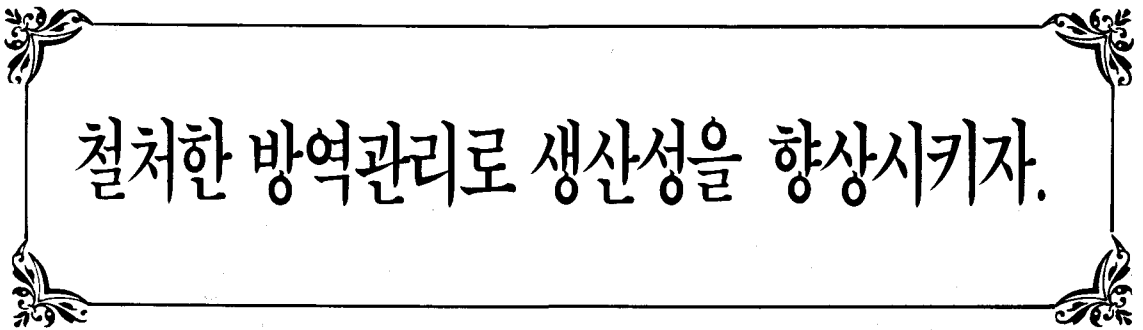
이번 교육기간 중 양축가 및 축산단체에서 989명, 축산관계 공무원 516명, 환경관계 공무원 246명이 참석하였다.

주요교육내용은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의 축산폐수처리대책, 환경처 오수관리과장의 축산폐수 관련환경시책, 축산종합연수원 시범사육과장의 가축분뇨 이용 및 처리, 가축위생연구소 잔류독성과장의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교육중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다.

질의 및 건의	답변 내용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에서 제시한 정화방법, 재활용시설, 무배출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선 환경공무원의 업무수행 지 난	○환경처에서는 동 법령의 제정시 농림수산부와 협의,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에 역점을 두었으며, '89년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제도에서 제시한 6가지 방법외에 기타 정화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 검토하여 '92년초에 기타의 정화방법을 인정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 배포할 계획임.
2. 낙농농가의 경우 젖소운동장 면적을 축사시설에 포함하여 규제하는지 여부와 규제하지 않을 경우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법에서 규정하는 사육시설의 정의는 "건축대장상에 명기된 축사 면적" 또는 "건축대장상에 명기되어야 할 축사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운동장 또는 방목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지만 운동장이나 방목지에 배설된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목장 경계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소의 방목장에서 배설된 분뇨의 법 규제여부	○배설된 분뇨 및 살포한 액비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목장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함.
4. 가축분뇨의 초지살포시 법 규제 여부	○법 규제 여부는 상기 3항과 같으며, 가축사육 두수당 적정 초지면적 기준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으나 정부에서 초지살포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험이 종료되는대로 부속기준 및 초지면적을 제시할 계획임.
5. 톱밥 우사를 법적인 정화시설로 인정하는지 여부	○톱밥우사는 돈사의 발효처리와 달리 톱밥을 깔짚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발효상 또는 퇴비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법적인 인정여부는 1항과 같음.
6. 양돈장의 경우 Slurry System으로 돈사시설을 하고 돈사 지하의 저장탱크에서 6~12개월 저장된 분뇨를 별도의 발효상으로 운반, 톱밥 또는 왕겨와 혼합하여 퇴비화하는 방법 또는	○슬러리돈사는 현행 법령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퇴비화방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정화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설계방법 및 처리절차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환경처의 인정을 받아 1항의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질의 및 건의	답변 내용
<p>별도의 저류탱크를 설치 액비화하는 방법을 정화시설로 인정하여 주기 바람</p>	
<p>7. 톱밥발효돈사의 표준설계도 제시 요망(설계비 및 지정시공업체 위탁비용 과다)</p>	<p>○현재 환경처에서 표준설계도를 작성중에 있으니 축협 및 양돈단체에서는 설계도 작성을 위한 자료 협조 요망</p>
<p>8. 톱밥발효돈사 설치시 모돈사와 자돈사의 정화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p>	<p>○법에서 명시한 활성오니 또는 저장액비화방법 등을 이용하여야 하나 별도의 톱밥발효상을 설치, 분뇨를 분리 수거하여 발효상에 투입, 발효처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1항의 업무지침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p>
<p>9. 육계농가의 경우 정화시설 설치 방법은</p>	<p>○육계 출하시 계분을 수거하여 퇴비화 하거나 농장내 수거된 계분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퇴비장이 있어야 함(계분을 야적하여 방치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게 됨).</p>
<p>10. 법 강화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된 농가의 경우 기 설치한 간이저장조시설이 인정받는지 여부와 동 저장조의 운영방법은</p>	<p>○간이저장조 저장용량(3개월이상 저장후 저류기능)이 부족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될 경우 별도의 저장조를 1개정도 신설토록 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p>
<p>11. 팔당, 대청 특별대책지역내 축산농가 정화시설비 및 운영비를 상수 수혜자에게 부담 요망</p>	<p>○현재 환경처, 내무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및 해당 시도간에 정부에서 설치한 공동처리장 운영비 부담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의 경우 정화시설 설치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음.</p>
<p>12. 축산농가의 방류수 수질검사 기관과 검사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는지</p>	<p>○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비용의 부담은 축산농가가 하여야 함.</p>
<p>13.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은</p>	<p>○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축산 농가는 무허가 축사를 구조변경하여 관련 법에 의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p>
<p>14. 법 규제 이하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 별도의 장소에 공동으로 정화시설을 할 경우 정부 지원자금의 수혜 가능 여부</p>	<p>○공동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장액비화법 등 법에서 제시한 규격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 지원자금의 수혜여부는 해당 시도에서 지역형편을 감안 조치하시기 바람.</p>
<p>15. '91 사업중 공동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허가기관의 정차 지연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의 '92이월 가능 여부</p>	<p>○'91 사업비의 이월 사유가 타당할 경우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p>
<p>16. 환경처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 대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p>	<p>○표준설계도 제작목적은 축산농가가 정화시설 설치시 설계비 부담 등 경비 절감과 이해도모를 위한 것으로 구조 및 규격을 유효용량에 충족토록 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이 법 기준에 적정할 경우 문제가 없으므로 표준설계도를 참고 또는 응용하여 유효용량에 맞도록 설치하였을 경우 문제점이 없음.</p>



철처한 방역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